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유경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593 발의연월일: 2021. 6. 4.

발 의 자: 유경준 · 김승수 · 김용판

박형수 · 서병수 · 송석준

윤한홍 · 윤희숙 · 태영호

황보승희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대리운전, 소포배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자(이하 "용역제공자"라 한다)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·중개하는 자는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연별(年別)로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용역제공자 사업장 중 92%가 개별 소득파악에 활용되는 과세자료를 당국에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,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주기를 단축하고 과세자료 제출의무 이행에 관한 유인책 및 불이행에 관한 벌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.

이에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주기를 연별에서 월별로 단축하고, 과세자료 제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자에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, 과세자료 제출의무를 위반하는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·징수하도록 규정함으로 써 용역제공자의 소득 파악 및 과세자료의 원활한 수집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173조 및 제177조).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3조제1항 중 "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"을 "달의 다음 달말일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"작성방법"을 "작성방법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적·재정적 지원"으로 한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과세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17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77조(과태료)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·징수한다.

- 1. 제162조의2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명령을 위반한 자
- 2. 제162조의3제8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명령을 위반한 자
- 3. 제173조제1항에 따른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과세자료의 수집에 대한 협조에 관한 적용례) 제173조제1항의
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
분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73조(과세자료의 수집에 대한	제173조(과세자료의 수집에 대한
협조)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	협조) ①
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으로서	
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리	
운전, 소포배달 등 대통령령으	
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	
(이하 이 항에서 "용역제공자"	
라 한다)에게 용역 제공과 관	
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 등	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용	
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	
성실히 작성하여 수입금액 또	
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<u>과세</u>	<u>달의</u>
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	다음 달 말일
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	
장,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	
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
	1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하
	여야 할 자가 과세자료를 성실
	하게 제출하는 경우 필요한 행
	<u>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</u>

- ③ 제1항에 따른 과세자료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77조(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제177조(과태료) 관할 세무서장은 과태료)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사항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 과·징수한다.
 - 1. 제162조의2제5항에 따른 신 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명령
 - 2. 제162조의3제8항에 따른 현 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명령

다.

- (4) 작성방법 및 제3항에 따른 행정 적·재정적 지워-----
-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·징수한다.
- 1. 제162조의2제5항에 따른 신 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명령을 위반한 자
 - 2. 제162조의3제8항에 따른 현 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명령 을 위반한 자
 - <u>3. 제173조제1항에 따른 용</u>역제 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제출 하지 아니한 자